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, 이용촉진 및 건전한 육성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(안 제6조)

-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 지원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제50조,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94조

나. 예산조치 : 10,230천원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【기획감사실-9072(2018.11.12.)】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【주민복지과-58491(2018.10.22.)】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'18. 10. 19. ~ '18. 11. 8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재정지원)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재정지원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 지원
6.·7. (생 략)	7.·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